

포항공과대학교 연구윤리규정

제정 2022.05.31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연구개발 과제 제안, 연구개발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·발표, 연구심사·평가행위 등 본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 및 이와 직·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.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

제4조(원칙)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,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이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.

⑤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
제5조(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) ①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(실험의 재료·과정·결과, 관찰·현장조사·설문조사 결과 등 원자료인 연구데이터와 이를 처리한 2차 자료)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,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,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본교는 연구노트, 연구노트의 소유, 관리 등의 책임, 보존, 폐기, 보안 및 공개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.

제6조 (연구성과의 사용)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, 연구문헌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,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, 연구데이터, 연구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이미 게재·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·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연구결과 활용)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.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.

제3장 학문교류

제8조 (연구결과 발표의 원칙)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제9조 (저자)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, 개념 정립, 연구수행, 결과 분석 및 작성 등 연구활동에 학술적·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학술적·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.

③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·자료의 수집,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연구에 직·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.

제10조 (저자의 소속기관 표시)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.

제11조 (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) ①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,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본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이에 대해서는 본교의 '연구보안관리세칙'에 따른다.

제4장 이해상충

제12조(금전적 이해상충) ①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사회, 대학, 본인이 속한 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.

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.

③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,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.

④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·대학·본인이 속한 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대학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제13조(사적 상충) ① 연구를 제안, 수행, 보고 및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,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.

② 연구자는 미성년자(만 19세 이하) 또는 가족(배우자, 자녀 등 4촌 이내)(이하 '특수관계인'이라 한다)의 연구 참여나 논문 공저에 따라 사적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

교 및 공동 연구자에게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관리,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③ 이에 대해서는 본교의 '특수관계인 연구참여 관리 기준'에 따른다.

제5장 연구대상의 보호

제14조 (인간 피험자 보호) ① 인간 피험자 및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본교의 모든 연구자는 피험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생명윤리위원회(IRB: Institutional Review Board)의 사전심의를 거쳐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이에 대해서는 본교의 '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'에 따른다.

제15조 (실험동물 보호) ①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본교의 모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이에 대해서는 본교의 '실험동물자원 관리 규정'에 따른다.

제16조 (생물안전관리)

①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및 인간 전염 미생물을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본교의 모든 연구자는 생물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생물안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이에 대해서는 본교의 '생물안전관리규정' 및 '생물안전관리지침'에 따른다.

제6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

제17조(연구자 권익보호)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,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.

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, 나이, 종교, 출신 지역, 성적 지향(指向) 등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,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.

④ 본교는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성희롱·성폭력,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

제18조(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)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,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, 데이터수집·저장·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.

제19조(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20조(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,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②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7장 연구윤리 교육

제21조(연구윤리 교육) ① 본교는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직무 담당자들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본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2조(연구자의 책무) 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,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제8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

제23조(설치) ① 연구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며,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본교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2. 기존 연구윤리규정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으로 개정한다.